

2

예산 지원 세부 기준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거주시설 중 「26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시설

□ 국고 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 보조금 지원 비율

(단위: %)

구 분	법인		개인**
	일반시설	실비시설*	
지원 비율	100	100	80% 이내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중 지원유형이 실비시설로 분류된 시설

** 개인시설의 경우 자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

□ 지원 세부 기준

- 기본급 : 2026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불임 1)
 - (기본급) 2026년 최저임금 수준 등 반영(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
 - (호봉) 호봉산정은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2026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호봉의 획정 및 승급 준용
- 수당
 -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20%(기본급의 60%씩 연 2회)
 - (시간외수당)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40시간, 일반종사자 20시간 (일반종사자에 시설장 제외)
 - 생활지도원 중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종사자로 간주
 -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가지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시간외수당, 퇴직적립금 지급 불가
 - 지방보조금 전액으로 추가 지원 가능
 -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대상시설의 경우 교대근무자 지급대상에 간호인력 추가(시간외수당 40시간 적용)
 - (가족수당) 배우자 40천원, 첫째자녀 50천원, 둘째자녀 80천원, 셋째이후 자녀 1명당 120천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 가족 1명당 20천원
 - 세부 기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준용

불임 1

2026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단위: 천 원/월)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 국장	과장	간호조무사 ('15년 3월 31일 이전 채용)	생활지도원		관리인	기능직
					선임	직원		
1호봉	2,921	2,630	2,428	2,428	2,313	2,236	2,181	2,157
2호봉	3,021	2,714	2,488	2,488	2,368	2,278	2,219	2,178
3호봉	3,123	2,813	2,554	2,554	2,435	2,319	2,262	2,216
4호봉	3,239	2,914	2,658	2,658	2,502	2,363	2,304	2,257
5호봉	3,372	3,034	2,768	2,768	2,569	2,426	2,352	2,297
6호봉	3,511	3,157	2,882	2,882	2,663	2,488	2,391	2,348
7호봉	3,650	3,279	3,000	3,000	2,759	2,581	2,474	2,387
8호봉	3,794	3,419	3,119	3,119	2,860	2,683	2,563	2,450
9호봉	3,939	3,565	3,235	3,235	2,977	2,779	2,636	2,528
10호봉	4,076	3,703	3,358	3,358	3,075	2,863	2,728	2,614
11호봉	4,224	3,837	3,472	3,472	3,172	2,937	2,794	2,681
12호봉	4,349	3,947	3,575	3,575	3,260	3,001	2,870	2,747
13호봉	4,465	4,050	3,665	3,665	3,333	3,063	2,937	2,815
14호봉	4,560	4,147	3,752	3,752	3,413	3,126	2,975	2,867
15호봉	4,655	4,240	3,836	3,836	3,490	3,191	3,009	2,913
16호봉	4,746	4,314	3,915	3,915	3,564	3,261	3,067	2,958
17호봉	4,831	4,392	3,990	3,990	3,633	3,332	3,125	3,015
18호봉	4,911	4,470	4,063	4,063	3,700	3,399	3,182	3,070
19호봉	4,986	4,539	4,128	4,128	3,763	3,459	3,231	3,128
20호봉	5,053	4,607	4,192	4,192	3,823	3,518	3,277	3,178
21호봉	5,119	4,673	4,252	4,252	3,885	3,570	3,333	3,233
22호봉	5,182	4,733	4,310	4,310	3,938	3,623	3,397	3,297
23호봉	5,241	4,791	4,365	4,365	3,989	3,672	3,463	3,360
24호봉	5,297	4,845	4,413	4,413	4,039	3,720	3,523	3,422
25호봉	5,351	4,899	4,461	4,461	4,091	3,766	3,580	3,485
26호봉	5,396	4,946	4,508	4,508	4,137	3,807	3,629	3,543
27호봉	5,441	4,990	4,547	4,547	4,175	3,843	3,677	3,591
28호봉	5,481	5,030	4,587	4,587	4,214	3,879	3,711	3,627
29호봉	5,511	5,063	4,624	4,624	4,251	3,913	3,748	3,665
30호봉	5,536	5,098	4,658	4,658	4,284	3,945	3,771	3,698
31호봉	-	5,131	4,689	4,689	4,317	3,977	3,810	3,724
총탁의	기본급 월 3,201천원(국고보조금으로 동 금액 이외의 추가적인(수당 및 적립금 등) 지급 금지)							
직종별 직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장 : 사회재활교사,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보행훈련사, 상담 평가요원 ·생활지도원 직원 : 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 선임은 생활지도원만 인정(승진 최소연한은 만3년(4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 2명 이내 지정 (3교대인 경우 3명 이내 지정),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 ·관리인 : 시설관리인 ·간호조무사('15년 3월 31일 이전 채용) : '15년 3월 31일 이전 채용자는 현행 직위를 유지. '15년 4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부터는 생활지도원급 인건비를 적용하며, '15년 3월 31일 이전 채용자 중 '19년도에 생활지도원급 인건비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 							

2026년 부산시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추가 보전액 + 특수근무수당 기준표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	과장	간호조무사 (15.3.31 이전 채용)	선임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관리인	기능직
1	59,600	53,200	49,200	49,200	47,100	45,800	44,400	40,000
2	61,400	55,600	50,600	50,600	48,400	46,300	45,500	44,100
3	63,800	57,500	52,200	52,200	50,000	47,500	46,600	45,100
4	66,300	59,900	54,200	54,200	51,200	48,500	47,200	45,700
5	68,900	61,900	56,500	56,500	52,900	49,400	47,600	46,500
6	71,800	64,100	58,500	58,500	54,800	50,700	49,300	48,200
7	74,600	66,900	61,500	61,500	56,600	52,500	50,700	48,800
8	77,200	70,100	64,000	64,000	58,600	54,600	52,600	50,200
9	79,900	72,600	66,000	66,000	60,600	56,500	53,400	51,300
10	83,300	75,200	68,800	68,800	62,400	58,200	55,500	53,700
11	86,200	78,700	70,900	70,900	65,200	60,200	57,500	55,000
12	88,500	80,400	72,900	72,900	66,300	61,600	58,400	55,700
13	91,000	82,400	74,600	74,600	68,300	62,400	59,600	57,800
14	92,800	84,300	76,600	76,600	69,900	63,500	60,600	58,900
15	95,300	86,700	78,000	78,000	71,300	64,800	61,000	59,100
16	96,600	88,200	79,600	79,600	72,700	67,000	62,800	60,100
17	98,200	89,600	81,400	81,400	74,600	67,600	63,400	61,100
18	100,100	91,200	83,100	83,100	75,900	68,900	64,900	62,500
19	101,700	93,100	84,000	84,000	76,400	70,400	65,500	64,200
20	103,000	93,700	85,800	85,800	78,200	71,300	67,300	64,500
21	104,300	94,900	86,700	86,700	79,000	73,100	68,500	66,100
22	105,900	96,900	87,700	87,700	80,500	74,400	69,200	67,200
23	107,200	97,800	88,600	88,600	81,900	75,100	70,200	68,600
24	107,900	98,900	89,900	89,900	82,000	76,000	72,400	70,000
25	109,400	99,800	90,900	90,900	83,400	76,500	72,800	70,900
26	109,800	100,700	91,700	91,700	84,600	78,100	74,100	72,100
27	111,100	101,700	93,000	93,000	85,000	78,800	75,400	73,400
28	111,400	102,200	93,800	93,800	86,400	78,900	75,500	74,100
29	112,300	103,100	94,300	94,300	86,900	79,800	76,700	74,500
30	113,300	104,100	95,400	95,400	87,900	80,800	77,100	75,500
31		104,300	96,000	96,000	88,000	80,900	77,700	75,800

* 추가 보전액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거주시설 지원기준(98.0%) – 특수근무수당(100,000원)

* 특수근무수당 = 기본급 차액이 100,000원 미만일 경우 실 차액으로 지급